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978호
- 나. 발 의 자 : 박석 의원(찬성자 30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8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<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의견표명>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 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함(안 제10조의2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직장운동경기부 현황과 인권침해 실태

1) 현황

- 직장운동경기부는 해방 직후 각 체육 종목별 협회가 발족되면서 창단되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스포츠 경쟁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-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민간위탁(사무형)으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각각 위탁 중이며, 비장애인 23개 종목 25개팀 179명과 장애인 8개 종목 8개팀 40명이 활동 중임(참고: 붙임자료3).

2) 인권침해 실태

- 체육계는 성과 중심 근로계약과 열악한 처우 등 노동문제, 위계적 질서에서 비롯되는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있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·단체의 장에게

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, 합숙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,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매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.

-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지도·감독의 방법 및 권한을 명시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임.
- 체육계가 추구하였던 엘리트체육과 경기실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스포츠인권 인식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실시한 ‘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’ 결과를 종합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음.
-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선수들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현장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·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음.

다.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(안 제10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▶폭력·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▶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

호 등을 위한 조치 ▶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▶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.

- 이는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제5조(인권보호 조치 등)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.
- 현행 “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”은 선수단의 폭력, 성폭력,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 선수 및 지도자가 해임 및 면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는 다소 미비한 실정임.
-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됨.

붙임 1**집행부 검토의견**의안번호
978**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	
	박석 의원 (주택공간위원회)	2023. 8. 8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	
주요내용	<p><제안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합숙소에서의 폭력성 통제, 사생활 자유 침해 증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기여 <p><주요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신설(안 제10조의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폭력·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-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- 휴식시간,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- 임신, 출산,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		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. 8. 8. 박석 의원 발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찬성) 김경훈, 김독욱 의원 등 30명 	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동의함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	팀장	정경옥(☎2133-2688)	담당	김동인(☎2133-2687)

국 가 인 권 위 원 회

상 임 위 원 회

결 정

제 목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
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

주 문

1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제5조 및 제17조의 인권보호 규정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「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독려하고,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.

2.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「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」 제5조 및 제17조의 인권보호 규정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「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.

붙임 3

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['23.8.29기준]

□ **비장애인 운영현황 : 23개 종목 25개 팀 정원 189명/ 인원 179명**

(단위 : 명)

연번	종 목	2023년 승인(A)			2023년 조정(B)			차 이			비 고
		합계	지도자	선수	합계	지도자	선수	합계	지도자	선수	
경기인 합계		185	33	152	189	33	156	4		4	
1	양 궁	5	1	4	5	1	4				
2	당 구	5	0	5	4	0	4	△1		△1	감 1명(선수)
3	자전거(여)	10	2	8	9	2	7	△1		△1	감 1명(선수)
4	육 상	10	2	8	10	2	8				
5	복 싱	8	2	6	8	2	6				
6	자전거(남)	10	2	8	10	2	8				
7	체 조	6	1	5	6	1	5				
8	스피드	5	1	4	5	1	4				
9	펜 싱	11	2	9	11	2	9				
10	축 구	27	5	22	27	5	22				
11	컬 링(남)	5	1	4	5	1	4				
12	수영	4	0	4	4	0	4				
13	스 키	4	1	3	4	1	3				
14	컬 링(여)	5	0	5	5	0	5				
15	쇼트트랙	9	2	7	9	2	7				
16	핸드볼	18	3	15	18	3	15				
17	정 구	7	1	6	7	1	6				
18	철인3종	7	1	6	7	1	6				
19	핀수영	6	1	5	6	1	5				
20	사 격	4	1	3	4	1	3				
21	탁 구	7	1	6	7	1	6				
22	태권도	7	2	5	7	2	5				
23	산 악	1	0	1	2	0	2	1		1	증 1명(선수)
24	조 정	4	1	3	5	1	4	1		1	증 1명(선수)
25	브레이킹	0	0	0	4	0	4	4		4	증 4명(선수)

□ 장애인 운영현황 : 8개 종목 8개 팀 정원 45명/ 한원 40명

(단위 : 명)

연번	종 목	현인원(A)				승인인원(B)				차이(B-A)				창단일
		합계	감독	코치	선수	합계	감독	코치	선수	합계	감독	코치	선수	
계		40	7	3	30	45	7	4	34	△5	-	△1	△4	
1	탁 구	6	1	1	4	7	1	1	5	△1	-	-	△1	'12.07.01.
2	휠체어컬링	7	1	1	5	8	1	1	6	△1	-	-	△1	'16.08.01.
3	골 볼	5	1	-	4	5	1	-	4	-	-	-	-	'19.02.01.
4	육 상	7	1	-	6	8	1	1	6	△1	-	△1	-	'19.04.01.
5	역 도	5	1	-	4	5	1	-	4	-	-	-	-	'20.10.05.
6	수 영	4	1	-	3	6	1	-	5	△2	-	-	△2	'20.10.05.
7	보치아	3	1	-	2	3	1	-	2	-	-	-	-	'20.10.05.
8	양 궁	3	-	1	2	3	-	1	2	-	-	-	-	'20.10.05.